

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	2006. 3.
발의자	이정석의원 외 5인

1. 제정이유

-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교육기회 불평등 논란을 해소 교육기회 균등제공 및 가계생활 안정을 도모
-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통한 정주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
- 근로자 복지향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평화정착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- 장학생 선발운영위원회 구성

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관내 근로자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평화정착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기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·대학생

②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이바지한 근로자의 자녀인 고등·대학생

③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.

제3조(장학생 수와 지급액) 장학금을 지급할 장학생수와 학생 1인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제4조(장학생선발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선발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시장과 한국노총구미지부장이 공동으로 한다.

④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종사 하는 자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.

제5조(장학생의 추천)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.

1. 노동조합이 구성된 사업체는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가, 미 구성된 사업체는 사용자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에 추천한다.

2.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의 추천이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 관련 단체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.

제6조(장학생의 선발) 장학생 선발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

제7조(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)①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3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 후 2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학기별로 분할 지급한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에 한한다.

제8조(지급정지)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.

1. 퇴학, 정학,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
2. 전 가족이 관할구역 외로 진출하였을 때
3.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4.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

제9조(장학생의 관리)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